

사천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18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융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, 수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령을 정비함
- 나.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6조)
- 다.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6조)
- 라. 별표 및 별지를 정비함

다. 관계법령

-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9조(기본지원사업) 및 제36조(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고용증대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운영중인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치시킴과 동시에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융자금의 지원을 원활하게하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조치로서
-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 내용	답변자	답 변 요 지
이정희 위원	○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?	기획감사 담당관 김영고	○ 본조례에 의거 지원사업비를 융자하는 과정에서 담보물 등 융자조건으로 2007년 경우 50%정도 밖에 융자되지 않았음. ○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 융자비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
탁석주 위원	○ 융자 금액만 높인다고 융자금이 원활하게 나간다고 볼 수 없음 ○ 융자금을 지원할 때 담보물건등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	“	○ 담보물건등이 가능한 대상자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생략